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2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배준영 · 김승수 · 권영진
추경호 · 최수진 · 서명옥
서지영 · 김성원 · 이상휘
김예지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증명하고 기록·관리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 ----- ----- ----- ----- ----- -----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증명하고 기록·관리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